의 안 번 호

1480

【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8. 10. 5.(금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0. 10.(수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0. 22.(월)

2. 제안이유

○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개정(2017. 12. 29. 공포, 2018. 1. 1. 시행)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영업장소 지정신청 등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변경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」
- ⇒ 「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」 나.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(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)
 -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른 '공공용재산'으로 범위 규정
- 영업장소별 중복 표현되는 첨부서류를 단순 명료하게 표기함 다.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 절차 마련(안 제4조)
 - 영업자가 구청장에게 직접 영업장소를 지정 신청.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2조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2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
- O 영업장소별 첨부되는 서류를 단순 명료하게 정리 및 필요사항 등 을 추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음.